KOSHA GUIDE

C - 44 - 2015

#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, 철골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작업상의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에 적용한다.

## 3.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공사 전 검토

- 4.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
  - (1) 부재의 형상 및 치수(길이, 폭 및 두께), 접합부의 위치, 브라켓의 내민치수, 건물 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세우기 형식이나 세우기 작업상의 문제점,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